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6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신정훈·조계원·박지원

이기헌 • 박홍배 • 정진욱

박정현 • 박희승 • 주철현

임미애 • 윤건영 • 차지호

채현일 • 박해철 • 박수현

복기왕 • 윤종오 • 강준현

한민수 · 김원이 · 박용갑

황정아 · 양부남 · 임호선

김문수 • 이상식 • 이건태

이광희 • 문금주 • 박선원

민형배 • 김영환 • 최민희

이재관·추미애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5장(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전단등 살포

- 제24조의2(전단등 살포의 신고) ①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전단등 살포를 시작하기 720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전단등 살포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 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

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단등 살포를 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전단등 살포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남북관계의 긴장 정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 의 금지를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4조의4(전단등 살포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신고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전단등살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일시를 새로 정하여 전단등 살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전단등 살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의5(해산 명령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단등 살포의 금지를 통고하였음에도 전단등 살포를 강행하려는 자에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 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모든 전단등 살포 참가자는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 살포를 한자
 -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하고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3. 제2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 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금지) 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전단등 살포</u>	<u><삭 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장 전단등 살포
<u><신 설></u>	제24조의2(전단등 살포의 신고)
	①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전단등 살포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
	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등
	살포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 시 내주어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신고자에게 24시간을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신 고한 전단등 살포를 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 힌 전단등 살포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 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 관서장은 신고된 전단등 살포 가 남북관계의 긴장 정도를 고

<신 설>

<신 설>

려할 때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의 금지를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전단등 살포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제24조의3제 1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 더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

<신 설>

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 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전단등 살포를 할수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전단등 살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전단등 살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5(해산 명령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4조의3제1항 에 따라 전단등 살포의 금지를 통고하였음에도 전단등 살포를 강행하려는 자에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u>제5장</u> 벌칙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 살 포를 한 자
-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3. 제2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전단등 살포를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